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20
----------	-------

발의연월일 : 2024. 3. 27.

발 의 자 : 양정규 · 윤미향 · 강성희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박용진 · 이자스민 · 심상정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인력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판매’는 납품업자등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핵심적인 업무로서, 본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과 고용에 부수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부담 전가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일부 허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또는 고용된 인력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파견’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파견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 전출 종업원에 대한 특례)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전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를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매장임차인을 종업원의 사용자로 보고,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종업원의 사용자로 본다.

③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출조건에 「근로기

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각각을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전출 종업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 전출 종업원에 대한 특례)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전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를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매장임차인을 종업원의 사용자로 보고,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u>

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
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대규모유통업자
를 종업원의 사용자로 본다.

③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
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출조건
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약
정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을 대
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
무하게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
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각각을 제2조제1항제2호의 사
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